

일반대학원 휴먼이미지학과 내규

개정 2024.11.2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휴먼이미지학과 학사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휴먼이미지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에 적용된다.

제2장 학위과정

제3조 (학위과정)

- ① 휴먼이미지학과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②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은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만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취득학점)

- ① 석사과정 : 휴먼이미지학과 전공학점 24학점을 취득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며, 타 학과 / 타 대학원 수강학점은 휴먼이미지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박사과정 : 휴먼이미지학과의 전공학점 36학점을 취득하여야 수료가 가능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타 학과 / 타 대학원의 수강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입학전형

제5조 (전형구분)

휴먼이미지학과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제6조 (지원자격)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③ 석·박사 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7조 (입학전형위원)

- ① 입학전형위원은 각 학과에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전임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
- ② 입학전형위원은 학과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학전형 지원자를 평가한다.

제8조 (입학전형방법)

① 일반전형

1.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를 병행한다
2.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 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나.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양식)
3. 구술시험은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 가. 전공에 대한 지식.
 -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 다. 전공에 대한 적성.
 - 라. 해당 학과 학업에의 지속성.
 - 마.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성역량.
 - 바. 지원자의 관심과 해당 학과 전공과의 연관성.

② 외국인전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및 기타 사정으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은 일반전형에 준한다.

제9조 (평가기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한다.

제4장 학위 취득 요건

제10조 (석사학위 취득요건)

휴먼이미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휴먼이미지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수강한 교과목들의 이수학점 및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휴먼이미지학과 석사학위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 휴먼이미지학과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제11조 (박사학위 취득요건)

휴먼이미지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박사학위 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1. 휴먼이미지학과 박사학위과정 중 수강한 교과목들의 이수학점 및 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휴먼이미지학과 박사학위 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부논문 1편(주저자,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할 수 있음)을 등재(후보)지에 게재(예정)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4. 박사학위청구논문 사전심사에 합격하여 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 신청증인서를 학과에 제출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5. 심사 절차 및 평가 기준은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사전심사

1. 신청대상 및 자격

- 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생.
- 나. 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과과정을 모두 수료(예정)한 자.
- 다. 부논문 1편(주저자,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할 수 있음)을 등재(후보)지에 게재(예정) 완료한 자.

2. 사전심사 절차

- 가.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이전까지 사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나. 박사학위논문 심사청구 직전 학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서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전까지 가능)
- 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1인으로 하여 진행한다.
- 라. 심사는 70점 이상의 경우에 합격을 인정한다.
- 마. 심사 형식은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 바. 심사가 끝나면 지도교수는 그 결과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한다.

☆사전심사 주안점☆

1. 휴먼이미지학 전공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분석모형(분석틀)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기반의 적절성 및 충분성
3. 분석모형(분석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제5장 종합시험

제12조 (시험시기)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13조 (시험과목)

- ① 학과 개설 전공과목 중, 해당 과목 수만큼 학과에서 지정한다.
 1. 석사과정: 3과목 이상 선정(3과목 시험).
 2. 박사과정: 4과목 이상 선정(4과목 시험).
- ② 종합시험 시행 과목 선정은 학과에서 응시 신청을 한 학생의 명단을 취합 후, 이에 따른 과목을 학과장이 선정한다.

제14조 (응시자격)

- ① 3학기 이상 재학생.

- ② 연구 등록금 필한 경우(수료생의 경우).
- ③ 전공학점 15학점 이상(석사), 전공학점 21학점 이상(박사) 이수.

※종합시험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학과사무실에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험진행)

- ① 시험 시간은 1과목당 60분으로 한다.
- ② 시험은 과제물 대체가 아닌 필답시험으로만 진행한다.

제17조 (시험위원) 응시 신청을 받은 과목을 취합하여 학과장이 출제위원을 선정한다.

제18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9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20조 (시험결과관리) 학과 학과장은 종합시험의 최종 결과를 매 학기 초 3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종합시험면제) 대학원 학칙 제22조 5항에 따라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 이를 충족할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준용)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